

보도 일시	2022.4.5.(화) 국무회의 시작 시(석간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4.4.(월) 오후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실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장 고송주 (044-200-5630)
		담당자	사무관 이광호 (044-200-5639)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 어장 관리 시작

-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어장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어장(漁場)’이란 김, 굴, 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하여, 바지락과 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어장 등의 수면(水面)을 말하는데, 지속가능한 양식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된 어장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반과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이번에는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과제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하고, 선제적인 어장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질 등 어장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어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양식장을 대상으로 퇴적 오염원 제거, 양식어장 위치 재조정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어장관리해역을 추가 지정(‘21 : 1개소 → ’26 : 3개소)해 어장면적 조정, 양식시설 이전 및 철거, 면허·허가 동시 개선을 비롯한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또한, 부표

교체비용,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부표를 인증부표로 모두 교체하고, 육상양식장 배출수 등 연안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스티로폼부표에 비해 파도, 조류, 햇빛 등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부표

아울러,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도('25년 시행 예정)와 연계해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어장을 어류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장정화·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어장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형 어장관리체제를 구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식업면허 등 유효기간 만료 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①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②어장환경 개선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

그 외에도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을 2026년까지 200개소로 확대('21 : 143개소)하고,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줄이고, 미래의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화)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국제사회는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오염 저감 노력과 관리 정책을 동시에 경주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이에 발맞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 어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2~'26) 주요 내용

□ 수립 배경

-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어장(漁場)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추진 중
- 제3차 기본계획이 '21년 종료됨에 따라, 기존 계획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 (성과)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확보라는 3대 전략으로 세부사업 추진
 - 「수산부산물법」 제정('21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시행('21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 예산 확대('21. 200억원) 등 어장환경 개선 분야에 성과 도출
- (보완점) 향후 4차산업 기술 발달, 잦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춘 어장통합관리 기반 마련 필요성이 대두
 - 참여형 어장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어업인의 어장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양식업 현장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발굴 필요

□ 주요 내용

비전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 어장 조성	
목표	○ 어장관리해역 지정: ('21) 1개소 → ('26) 3개소 ○ 친환경 부표 전환: ('21) 38% → ('24) 100% ○ 어장환경평가 대상 업종 확대: ('21) 1종 → ('25) 6종 ○ 실시간 어장환경 관측시스템 확대: ('21) 143개소 → ('26) 200개소	
전략	① 청정 어장 이용보전	① 어장관리해역 확대 및 환경개선 ② 발생오염 최소화 및 사전예방 ③ 양식생산관리제도 기반 구축
	②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④ 어장평가 체계 고도화 ⑤ 어장관리사업 이행력 강화 ⑥ 참여형 어장관리체제 구축
	③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⑦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⑧ 미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1 청정 어장 이용·보전

2021년	2026년
■ 어장관리해역 지정 1개소 ■ 인증부표 보급: 38%	■ 어장관리해역 지정 3개소 ■ 인증부표 보급: (24년) 100%

- (어장관리해역 확대) 어장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어장환경기준 초과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

* (후보지 선정)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환경모니터링(전국 269개 정점, 59개 해역) 결과,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3개 이상)인 해역

- 어장관리해역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대상 사업 우선 지정, 어장휴식직불제 등 지원체계 마련

- (발생오염 최소화)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인증부표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추진

* 인증부표 구매 자부담 하향조정(30%→20%), 부표 운반·설치 장비(크레인 등) 지원 검토

- 수산부산물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해상 기원 오염물질의 관리 기반 마련으로 발생가능한 오염 요인을 최소화

- (양식생산관리제도 기반 구축) 해역별·품종별 양식어장의 생태 환경조사*와 어장수용력의 현장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양식생물 서식환경, 양식생물별 먹이원, 식물성플랑크톤 크기별 조성 비율 등

2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2021년	2025년
■ 어장환경평가 대상 업종 1종 * 어류등 양식업(가두리): 300건	■ 어장환경평가 대상 업종(25년): 6종 * 모든 면허양식업: 1만 건

- (어장환경평가 확대) '25년부터 시행되는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 제도*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 확대**

*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평가하여 등급별 면허연장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

** (현재) 어류등 양식업(가두리): 300건 → ('25) 모든 면허양식업: 1만건

- 어장의 종합적인 건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어장생태계 건강도 평가기법 개발(어장별, 품종별 건강도 평가기법 및 등급화)로 양식어장 관리방안 제시
- (어장관리사업 이행력 강화) 어장정화·정비사업 유형별(폐기물 수거, 객토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지자체 포상 등 지자체의 적극적 수행 유인
- (참여형 어장관리) 현장 참여 제고를 위해 해역별 특성, 품종별 양식방법 등 현장 맞춤형 어장환경개선 사업을 마련, 이행 지원

③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2021년	2026년
■ 실시간 어장환경 관측시스템 143개소	⇒ ■ 실시간 어장환경 관측시스템 200개소

- (어장관리통합플랫폼) 수산재해 피해 저감,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 제공 등 양방향 서비스 체제 구축

* 실시간 관측 정보를 홈페이지(www.nifs.go.kr/risa), 스마트폰 앱, SMS 서비스 개시

- (미래 환경변화 대응) 이상수온, 저산소화 등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무인·자동화 기반의 실시간 어장환경 관측시스템으로 개편하고,
- 현재 143개소로 운영 중인 관측망을 '26년까지 200개소로 확대*

* 실시간 관측망 개소수: ('14) 32개소 → ('17) 54 → ('21) 143 → ('26) 200

□ 추진 배경 및 경과

- 어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의 양식업면허 심사·평가와 어장환경평가의 시행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며, 어장환경 보전을 위한 어장관리 의무 이행력 확보 등 제도 보완 필요

□ 주요 내용

- 어장환경평가의 주체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 어장환경평가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양식업면허의 심사·평가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어장환경평가의 주체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양식업면허의 심사·평가와 연계한 어장 관리를 도모함
-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제33조제1항 삭제)
 -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함

참고 3

어장정화활동 사진

